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광호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759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20.

2. 제안사유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(안 제1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10. 25. ~ 2021. 11. 1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) : 원안가결

○ 신설 조항은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」에서 규정한 경영개선사업, 택시 감차보상 사업,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사업 등 사업을 서울시 조례의 재정지원 가능 사업에 추가하는 조항임

○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※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 내용

1.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양도·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
2.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(減車) 사업
3.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(이하 “택시”라 한다)의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친환경 택시”라 한다)로의 대체 사업
4.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·개선·운영 사업
- 4의2.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
5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2012년에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택시

기본 조례」을 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¹⁾ 근거를 마련하였음

○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1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,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설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서울시 재정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

○ 또한,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여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'20년 5월 동 조례를 개정²⁾하여 재난발생 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

○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³⁾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

1) 2012.7.30.일 제정 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

- 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 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생략

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용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5.19>

3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재정 지원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
- 다만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⁴⁾에서는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보조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국토교통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

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시 예산절감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“4의2.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”과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“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”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추후 조례개정시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

4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재정 지원) ① - 생략 -

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·도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·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이하 “택시운송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 보조한 자금. 다만,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·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.
2.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